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05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박수현·서삼석·이개호

양부남 • 신영대 • 박용갑

임오경 · 조인철 · 이정문

어기구 · 위성곤 · 허 영

윤후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,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또한,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 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,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,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,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국가유산수리업자는"을 "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"으로, "국가유산수리를"을 "국가유산수리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가유산수리업자는"을 "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"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·공제의 가입) ① 국가유산수리 업자등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업 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당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4조(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 제34조(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) ① 국가유산수리업 배상책임) ① 국가유산수리업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 자등은----국가 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 유산수리등을-----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-----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 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34조의2(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・공제의 가입) ① 국가유 산수리업자등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 1. 국가
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의2. (생 략) <신 설>

7. ~ 10. (생 략)

② (생략)

2	ス	サス	-え	단체	
⊿.	1 1	0 ′ .	' '	11 11	
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.
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
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
지 아니한 자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